

의안 번호	2487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10. 2.(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0. 2.(목)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0. 16.(목)

2. 제안설명 요지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가. 제안이유

-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위탁기간이 2025.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전문성 있는 문화관광 정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 위탁의 필요성
 - 지역 기반의 문화·관광 업종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시 열린 공간 생태계 조성 필요
 -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 문화와 운영의 안정성,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 인력인 지역 문화예술 종사자(민간,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 필요

○ 위탁사무 내용

- 이팔청춘마을공방 시설 유지관리, 예약, 대관 관리
- 이팔청춘마을공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홍보
- 관광종합공유소(플랫폼) 운영, 문화예술관광 소통 창구
- 원도심 문화·관광업종 협업 및 자발적 참여 지원을 통한 지역 체협 관광 활성화
- 그 밖에 이팔청춘마을공방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	소재지	규모	종사자	시설현황
이팔청춘마을공방	새즈른해거리 28 (성남동)	187.5m ² (1층)	3명 (대표1, 수행인력2)	○ 프로그램실(공유주방 포함) 사무실, 화장실
위치도				

○ 위탁기간: 2026. 2. 1. ~ 2027.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에 따른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소요예산: 50,0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27조에 따라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관내 자발적인 문화, 예술, 관광업종 종사자들과 민간 참여를 통해 운영 효율성 증대와 시장 접근의 용이성 요구에 따라 민간 위탁이 적절함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체험 관광시설로서의 공유공간 개방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운영 시 자격을 갖춘 직원 및 수행인력을 채용할 경우 추가 예산 필요, 민간 위탁시 운영 전담 집중화로 부담 경감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의 특화된 인적자원, 역량 활용하여 다양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력(강사진 포함) 확보 용이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활동 및 운영 보고를 통해 성과 측정 ○ 보조금 정산·보고를 통해 지속적 성과 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고 수탁기관 지도 및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반 문화, 예술, 관광 사업체) 누구나 관광종합공유소 활용 가능(홍보, 알림 등 지원) ○ (이용자) 프로그램 신청자, 방문객 누구나

-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민간의 전문적 역량과 현장 상황에 유연한 대응 서비스로 방문객 만족도 제고에 도움이 됨
- 또한,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인력 활용 시, 수반되는 제경비 절감, 효과적인 홍보, 체계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의 탄력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무는 민간 위탁 수행함이 적정함

○ 추진일정

-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2025. 11월
-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2025. 12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6. 1월
- 민간위탁 운영 개시: 2026. 2월

다.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27조
-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주)

- 본 동의안은 이팔청춘마을공방 관광종합공유소 운영 위탁기간이 2025.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화관광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2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기념품, 캐릭터상품,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최초위탁, 재위탁, 재계약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받은 사항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위탁 예산의 증감,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예정 30일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탁자를 긴급하게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탁자 모집 공고 전일까지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